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8 선고 2024가단13294 판결

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및구상금청구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1. 8.

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4. 8. 22. 위 · 수탁관리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.
2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,326,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8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김효연

별지